

고
사

기 안 용 지 고시제 70 호

공보
1932 3

(전화번호 75-7874)

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

처리기관

제 1 부 서 장

시행일자

홍

보존년한

보	공보실장	홍	법무과장	(대한법제)
조	문화계장	김영대	법제계장	()
기			서민과장	
관			조	문서관리계장

기안책임자 김영대 7.4.

경유	내무법제	발신	통계
수신			
참조			



계부 우선 사회단체 취소

1.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의
 위반 제기 보고서를 제출한 많은 대상 단체에 대하여
 보고서를 대조등록 절차 등록하고 변동된 단체 소재
 를 확인한지 게시공고 및 소재 확인 결과 (별첨)에
 따라 다음에 사회단체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2 등록을 취소하고 별첨 표의 단체 같이
 취소처분을 실시한다.

경
사
관
인
발
송

가. 취소 단체 명단

단체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대동자	주소소재지
1	33	9. 5. 1	서울시여성회	김정숙	구입길동 19-1
2	34	9. 5. 27	한국여성노동자회	이경우	" 을지2가 199-18
3	35	9. 8. 29	대한여성노동조합	김영진	" 방안동 1-2
4	38	9. 10. 20	" 성북구	이근배	동대문구 제기동 6-2
5	39	9. 10. 20	" 성북구	안부중	종로구 종로 4-2
6	40	9. 10. 31	" 성동 "	김백연	성동구 신당동 113-1
7	41	9. 11. 3	" 용산 "	박병욱	용산구 남영동 12
8	42	9. 11. 11	" 종로 "	고승부	종로구 도렴동 11
9	45	9. 12. 15	" 성동제2 "	조용혁	성동구 신당동 25-30
10	47	9. 12.	" 용산제2 "	최선주	용산구 관철동 11-4
11	51	70. 9. 8	대한여성노동조합	유영도	영등포구 봉천동 158
12	55	71. 6. 2	서울여성생활개선협의회	김영주	용산구 한강2가 315-1
13	56	71. 10. 2	대한여성노동조합	김전배	종로구 북창동 135-1

첨부: 서울여성노동조합 등 등록 취소 기사 (안) 1부 끝.

* 위 단체는 소재 불명인 것으로 취소 통지를
생략하게 합니다. (부속 1항)

공 시 (한)

공시안심사	1973.5.2	제 78
산 사 자	법 제 제 장	법 부 부 장
홍	(인)	(인)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사회 단체 등록 취소 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등록을 취소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뒷기 이어

1973 년 5 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양 투 식

다 음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취소 이유	근거
33	서울소비자대책본부	김경석	소재불명 미정기 보고서 계속 2회 이상 불이행	법률 제 8조 제 1항 제 2호 제 4호
34	반공시청각 교육연구소	이경우	"	"
35	대한무도예술협회 중구지부	김영규	"	"
38	" 성북 "	이근배	"	"
39	" 서울직할 "	안무중	"	"
40	" 성동지부	김벽연	"	"
41	" 용산 "	박병욱	"	"
42	" 종로 "	고승부	"	"
45	" 성동제2 "	소용택	"	"
47	" 용산제2 "	최선규	"	"
51	대한미악협회 영등포지부	유영도	"	"
55	시민승공생활화 계몽협의회	김영두	"	"
56	대한무도예술협회남대문지부	김진배	"	"